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인천·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여객심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 8명(8급 6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정원 조정(안 별표 4·4의2, 별표 12·12의2 및 별표 13)

1)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하부조직으로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함.

2)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인천·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같은 기관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 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5의2, 별표 7

• 7의2, 별표 8)

-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2의4, 별표 3, 별표 4)

-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24항제1호·제3호·제5호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로, “제15항제1호”를 “제17항제1호”로, “제15항에”를 “제1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크루즈·여객심사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중 제2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⑬ 선박심사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18항(종전의 제16항) 본문 중 “제15항제7호”를 “제17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항제1호”를 “제17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7항) 본문 중 “제15항제9호”를 “제17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항제7호”를 “제17항제7호”로, “제21항제1호”를 “제2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로 한다.

별표 2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4의 광주소녀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소녀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 순천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인천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옹진군”을 “영종구 · 제물포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옹진군”으로 하고, 같은 표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 나주시 · 담양군 · 곡성군 · 화순군 · 영광군 · 장성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나주시 · 담양군 · 곡성군 · 화순군 · 영광군 · 장성군”으로 하고, 같은 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란 중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계양구·강화군”을 “서해구·검단구·계양구·강화군”으로 하고, 같은 표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별표 4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란은 삭제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여수시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여수시·순천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은 제외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삭제>	부산광역시 <삭제>	부산광역시 감천항 · 다대포항 <삭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신안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은 제외한다)·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별표 4의2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크루즈·여객심사과 , 선박심사과 ,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	---

별표 5 중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 “69”를 “72”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1”을 “2”로 하고, 공업서기보 “92”를 “94”로 하며, “통신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전기운영서기 “5”를 “3”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서기 “69”를 “72”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1”을 “2”로 하

고, 공업서기보 “92”를 “94”로 하며, “통신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전기운영서기 “5”를 “3”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 “3”을 “4”로 하고, 의료기술서기 4 다음에 “시설서기 1”을 신설하며, “시설서기보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46”을 각각 “2,699”로, 출입국관리주사 “448”을 “460”으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4”를 “727”로, 출입국관리서기 “706”을 “720”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28”을 “542”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46”을 각각 “2,699”로, 출입국관리주사 “437”을 “449”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4”를 “727”로, 출입국관리서기 “706”을 “720”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28”을 “542”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의 “2) 국제법무국” 및 “3)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를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호 나목에 13) 및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3)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출입국·외국인청)	35명 (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출입국·외국인청)	14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생략)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 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⑩ · ⑪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다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24항제1호·제3호·제5호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17항제1호----- ----- ----- ----- 제17항에 ----- -----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⑫ ~ ⑮ (생 략)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

⑫ 크루즈·여객심사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중 제2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⑬ 선박심사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 ⑰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⑱ ----- 제17항제7호-----

---. -----

제17항제1호-----

-----.

⑲ ----- 제17항제9호-----

---. -----
----- 제17항제7호-----

----- 제23항제1

<u>1호</u>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u>⑱</u> · <u>⑲</u> (생략) <u>㉑</u> ~ <u>㉕</u> (생략)	<u>호</u> ----- ----- --. <u>㉒</u> · <u>㉓</u> (현행 제18항 및 제19항과 같음) <u>㉔</u> ~ <u>㉗</u> (현행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u>2</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9</u>	<u>18</u>	-1
•	•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u>2</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9</u>	<u>18</u>	-1
•	•	•	
•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69</u>	<u>72</u>	+3
방송통신서기	<u>1</u>	<u>2</u>	+1
·	·	·	
·	·	·	
공업서기보	<u>92</u>	<u>94</u>	+2
·	·	·	
·	·	·	
통신운영서기	<u>1</u>	<u><삭 제></u>	-1
·	·	·	
·	·	·	
전기운영서기	<u>5</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	<u>5</u>	<u>4</u>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69</u>	<u>72</u>	+3
방송통신서기	<u>1</u>	<u>2</u>	+1
·	·	·	
·	·	·	
공업서기보	<u>92</u>	<u>94</u>	+2
·	·	·	
·	·	·	
통신운영서기	<u>1</u>	<u><삭 제></u>	-1
·	·	·	
·	·	·	
전기운영서기	<u>5</u>	<u>3</u>	-2
·	·	·	
·	·	·	
기계운영서기	<u>5</u>	<u>4</u>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3</u>	<u>4</u>	+1
•	•	•	
•	•	•	
<u>시설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u>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보	<u>2</u>	<u>3</u>	+1
•	•	•	
•	•	•	
<u>전기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u>기계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646</u>	• <u>2,699</u>	+53
일반직 계	<u>2,646</u>	<u>2,699</u>	+53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48</u>	<u>460</u>	+12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714</u>	<u>727</u>	+13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706</u>	<u>720</u>	+14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28</u>	<u>542</u>	+14
•	•	•	
•	•	•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2,646		2,699	+53	
일	반	직 계	2,646		2,699	+53	
			•		•		
			•		•		
		출입국관리주사	437		449	+12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727	+13	
			•		•		
			•		•		
		출입국관리서기	706		720	+14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528		542	+14	
			•		•		
			•		•		